
한국환경산업협회

2024년도 우수 녹색산업 해외진출기업 지원사업 안내



사업목적

-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기업을 '우수 녹색사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'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**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**

지원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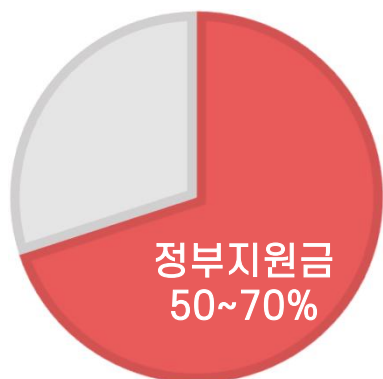
- (예산) **총 54억원** (단계별 최대 1~3억원, 약 25개사 내외 지원)
- (사업기간) 협약체결일 ~ 2024. 11. 30. (**약 10개월**)

구분	단계	대상	지원내용	지원규모
기반 조성	전략수립 [1단계]	- 해외진출 전략 미수립 기업	해외진출전략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진출방향 설정	1억원 (총 6억원)
	역량강화 [2단계]	-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10% 이상인 기업 - 해외진출 전략보고서(별지 제1-3호 서식) 작성완료 기업	수출기반 확충 등 수출역량 개선 ※ 1단계 수행기업 가점 5점('25년~)	3억원 (총 30억원)
판로개척 [3단계]		-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20% 이상인 기업 - 해외진출 전략보고서(별지 제1-3호 서식) 작성완료 기업	입찰 및 투자 지원, 거래선 다변화 등을 통한 수출실적 최대화	2억원 (총 18억원)
총계				54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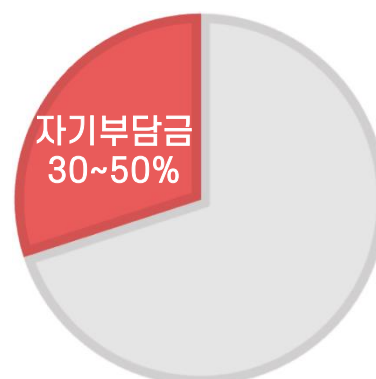
주요 지원내용

구분		기반조성		판로개척
		전략수립	역량강화	
전문가 활용	전략 컨설팅(해외진출 전략 컨설팅)	◎(컨설팅사 위탁)	-	-
	브랜드 개발(컨셉/CI/브랜드/디자인 개발 등)	-	◎	-
	전문 컨설팅(법무, 세무, 통관, 수출, 회계, 시장조사 등)	-	◎	◎
	해외법인설립 및 계약지원(해외법인설립, 공공조달 참가, 글로벌 공급망 진출 등)	-	-	◎
	통번역	-	◎	◎
마케팅	전시회/행사 참가(해외 전문 전시회, 제품시연회 등)	-	◎	◎
	홍보물 제작(영상, 브로슈어, 웹페이지, 모형 등)	◎(컨설팅사 위탁)	◎	-
	전자상거래 등록	-	◎	◎
	홍보/광고(TV, 신문, 잡지, SNS 등)	-	◎	◎
기술실적 확보	인증	-	◎	-
	특허 등 지재산 취득	-	◎	-
	시험분석·대행	-	◎	-
	제품 샘플 제작	-	◎	-
출장 및 초청	국외출장	◎(컨설팅사 위탁)	◎	◎
	바이어초청	-	-	◎
수수료	물류비(수출물품 선적, 시제품, 전시참가용)	-	◎	◎
	수출보험	-	-	◎

지원금액



- ✓ (예산) 총 54억원
- ✓ (지원기업 수) 25개사 내외
- ✓ 기업당 정부지원금 1~3억원 이내
- ✓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최대 70% 이내



- ✓ 국고보조금 최대 50~70% 지원
 - ✓ 자기부담금 최소 30~50% 부담
- ※ 매출액 구간별 금액이며, 자기부담금 내 현금비율 20% 이상

단계	매출액 (2년 평균)	500억원 미만	500억원 이상, 1,000억원 미만	1,000억원 이상
전략수립	-	지원금 100%(자기부담금 없음)		
역량강화/ 판로개척	국고보조금	최대 70%	최대 60%	최대 50%
	자기부담금	최소 30%	최소 40%	최소 50%

사업기간

약 10개월

(협약체결일~2024. 11. 30.)

지원사업 특징점

- ✓ 해외수출 관련 수행기업 특성 맞춤형 예산 활용 가능
- ✓ 단계별 연속성 있는 참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

신청자격

-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체 중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,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,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·여력이 있는 **중소·중견기업(법인사업자)**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
- 기타 녹색산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사업자

신청자격 제한(사업안내서 참고)

- 접수 마감일 현재 **창업 1년 미만의 기업**(단,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)
-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
- 환경부의 타 해외진출 보조사업에서 **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**
- 본 보조사업을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수행한 적이 있는 기업(단, 신규 국가, 아이템으로 수행은 가능)
- 접수마감일 기준, 직전연도 3년 이내에 환경부의 타 해외진출 보조사업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, 직전연도 3년 이내에 본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협약 해약, 중단 또는 평가결과 “60점 미만 ” 으로 판정 받은 경우 등

필수 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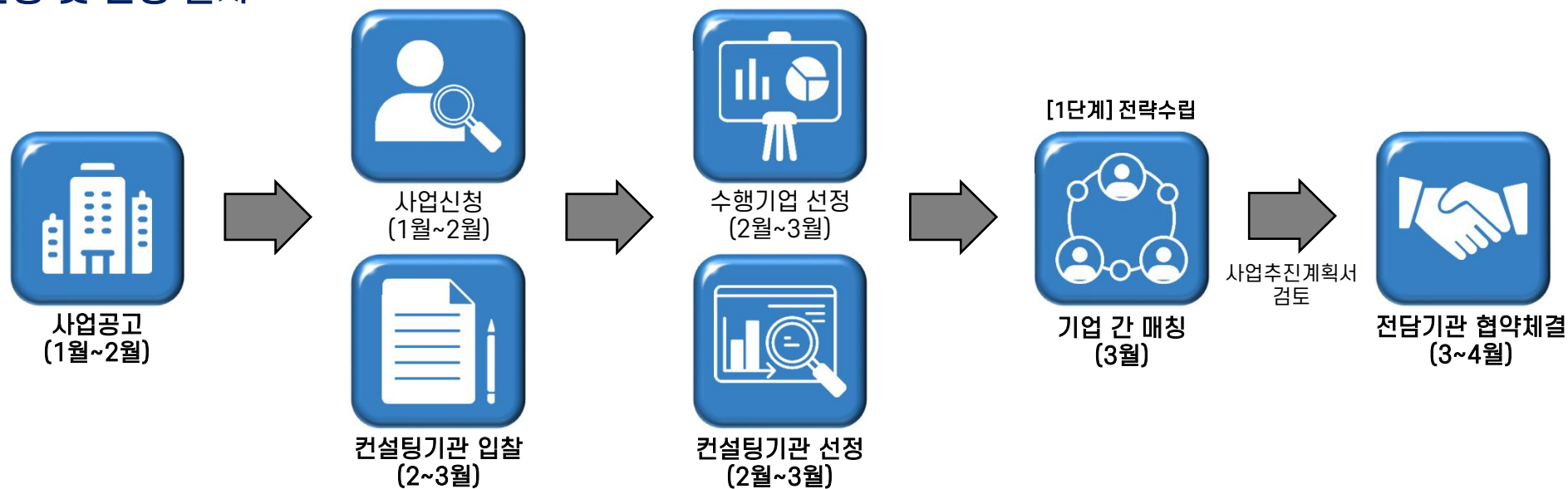
제출서류	수량
환경기업 신청서(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)	1부
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	각 1부
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(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)	각 1부
최근 2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	각 1부
4대 보험 납입 증명서(국민연금, 의료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중 택 1)	각 1부
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각 1부
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및 활용 동의서 (대표자용, 담당자용)(관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)	각 1부
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(해당기업)	각 1부
사업책임자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이력서	각 1부
해외진출 전략보고서 (역량강화, 판로개척에 해당)(관리지침 별지 제1-3호 서식)	각 1부
기타 증빙서류 등(신청기업 실적 증빙자료 등)	각 1부

신청 시 유의사항



- 미비 서류 보완요청 및 **필수서류 누락 시에는 서류 평가 탈락 조치**
- 신청자격 제한 요건 숙지 후 신청
- 제출서류는 신청기관에 반환되지 않으며, 전담기관은 동의없이 서류내용을 공개하지 않음
- 사업신청 시 **협약기간 및 당해년도 수출목표액 제시**
(예상 협약기간: '24. 3~11월, 약 10개월)
- 사업비 산정 시 **정부지원금은 단계별 최대 1~3억원 내 산정**하며, 총 사업비의 70% 이내가 되도록 구성
(예) 총 사업비 2.86억원 = 정부지원금(70%) 2억원+ 민간부담금(30%) 0.86억원(0.68억원(현물)+0.18억원(현금))
- 온라인 접수만 유효하며 **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**
(단, 업로드 용량 초과 시 마감일 최소 3일 전 사전 문의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가능)

신청 및 선정 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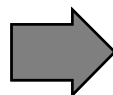
사업수행 절차



지침개정 및 사업변경 현황

■ 사업단계 변경

단계	신청자격	지원규모	지원내용
수출 초보	평균 수출액 1억원 미만	최대 1억원 (총 15억원)	· 시장확장을 마케팅 네트워크
수출 안정	평균 수출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	최대 2억원 (총 16억원)	· 현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전문가 활용
수출 고도화	평균 수출액 10억원 이상	최대 2억원 (총 14억원)	· 목표국 기술실적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
총계	총 45억원		



단계	신청자격	지원규모	지원내용
전략수립 [1단계]	해외진출 전략 미수립 기업	최대 1억원 (총 6억원)	· 전략 컨설팅 ²⁾ · 홍보물 제작, 국외출장 (총 3천만원 이내)
역량강화 [2단계]	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10% 이상 ¹⁾	최대 3억원 (총 30억원)	· 브랜드 개발, 전문 컨설팅, 전시회, 홍보물 제작, 인증, 샘플제작 등
판로개척 [3단계]	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20% 이상 ¹⁾	최대 2억원 (총 18억원)	· 해외법인설립, 전시회, 바이어초청, 물류비, 수출 보험 등
총계	총 54억원		

※ 기업당 1개 단계만 신청 가능 및 지원상황에 따라 단계별 지원규모가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1) 결산 완료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며, 해외진출 전략보고서
(별지 제1-3호 서식) 작성완료 기업 대상

2) 직접 보조금 지급이 아닌 컨설팅 용역 형태로 지원(홍보물 제작, 국외출장 3천만원 이내 포함)

■ 기타 변경사항

- [평가기준 개편]

- (선정평가) 매출액, 수출액 등 **정량지표(기존 30점) 삭제** 및 기업의지, 사업준비도, 목표이행 가능성 등 **정성지표(100%) 평가**
- (최종평가) 지원단계별 평가지표 차별화 및 **평가결과 3단계(성공, 보완, 실패) 구성**으로 **사업결과 보완기회 제공**

- [전략 컨설팅사 선정강화] **제한경쟁입찰**을 통해 사업성과, 컨설턴트 개별 능력, 보유 네트워크 등 다방면에 대한 대면평가

지침개정 및 사업변경 사항

■ 주요 지침개정 사항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「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준용

구분	기존	변경	사유
사업책임자 강화	•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자	• 부장급 이상 의 상근 직원으로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자	• 사업운영 책임강화
제출서류 완화	• 신용평가서 제출	• 폐지(이자보상배율로 대체)	• 기업부담 완화
컨설팅사 풀 운영제도 폐지	• 5급 이상 상근 컨설턴트 3명 이상 및 관련 역량 보유 조건 • 컨설팅기관 풀 등록 →제공	• 책임연구원급 이상 상근 컨설턴트 1명, 연구원급 상근 컨설턴트 2명 이상 및 관련 역량 보유 조건 • 2천만원 초과 용역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(나라장터) 활용	• 「통합관리지침」 준용
사업신청 제한기준 신설	• 기존 제한기준 변동없음	• 개인사업자 ,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• 3년 내 환경부의 타 보조사업 제재를 받았거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및 본 보조사업 중단, 60점 미만 판정 등 경우 • 10년 내 본 보조사업 4회 이상 선정 지원받은 경우 •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대상할 경우 •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'1' 미만 인 경우	• 「통합관리지침」 준용
협약변경 제한	• 무제한	• 3회 (변경 횟수 초과 시 변경요청 반려 가능)	• 사업 목적성 소실우려
지원단계 재구성	• 수출액 단계로 구분 • 수출초보, 안정, 고도화 3단계	• 수출 성장단계 로 구분 • 전략수립[1단계]→역량강화[2단계]→판로개척[3단계]	• 전략수립 부재 보완 • 지속적 지원체계 마련
국고보조금 비중	• 중소/중견기업 비중 차등화	• 기업 매출액 구간별 비중 차등화	• 기업규모 형평성 제고